

독일 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경찰교육제도 개선방안 모색 —

〈경찰대 교수〉 이관희 · 임준태*

제1장 서론(문제제기)

최근 우리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구제금융 사태)를 계기로 사기업, 공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고에 바탕을 둔 경영혁신과 조직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쟁력, 생산성, 능률성 면에서 사기업보다 덜 긴장하였던 공직사회도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세계 정세(경제전쟁) 속에서 더 이상 예외 지대가 될 수 없게 되었다. 新思考와 혁신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한국 경찰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교육제도에 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게 검토해 볼 과제가 있다.

하나는 신임순경 교육문제이다. 과연 현재

실시하고 있는 16주(4개월)의 교육기간으로 법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민주경찰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신임경찰관들에 대한 교육문제는 경찰권 행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전체 경찰관의 약 90%를 차지하는 경사급 이하 일선경찰관들은¹⁾ 향시 일반시민들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데, 그들의 주된 교육과정은 신임순경교육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경찰대학 교육문제이다. 현재 지방대학에 20개의 경찰(행정)학과가 신설되어 있는데, 그들은 졸업 후 순경공채, 경장특채나 간부후보생 과정을 통하여 경찰직에 입문할 수 있는 바, 국립경찰대학 출신과의 형

* 법학박사(1997년6월, 10-12월, 1998년 1월에 Baden-Württemberg州 경찰학교, 동경찰대학 3학년과정, 연방경찰대학원 1학기 과정, 연방수사국에서 각각 견학 및 실습)

1) 경찰청, '99경찰백서, p. 235.

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경찰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대학에 대학원을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만하다.

본 논문에서 독일경찰교육제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상기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경찰 50여년의 역사속에서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독일의 경찰교육제도(순경 신입교육 기간이 평균 36개월, 50개월 전후의 경찰대학과정, 2년간의 경찰대학원과정)를 제대로 소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모쪼록 본 논문을 통하여 독일의 경찰교육제도를 하나의 모델로 한 우리나라의 경찰교육제도가 개혁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제2장 독일 경찰제도 개관

제1절 경찰개념의 변천사

독일에서의 경찰개념의 유래는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바, 경찰(Polizei)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의 politeia에서 유래된 말이며, 독일에서는 15세기 후반

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²⁾ 16세기에 이르러서 독일 제국과 支邦 또는 領邦국가들의 경찰규정들은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제국의회(Augsburger Reichstag)에서 경찰사무가 帝國법령화되었다. 당시 경찰임무의 범위에는 생존배려적(Daseinsvorsorge und Wohlfahrtspflege), 복지증진적 의미가 포함되었다.³⁾ 당시에는 경찰이라는 단어는 정치학 내지는 법학적 용어였다. 그후 정치적 상황이나 헌법학적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도 변화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공적 안전과 질서(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라는 의미외에도 15-17세기경에는 경찰개념을 “공동체에 있어서 양호한 질서상태(unter guter Polizey ganz allgemein eine gute Ordnung des Gemeinwesens oder Zustand guter Ordnung des Gemeinwesens)”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경찰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근간으로 독일 제국의 경찰규정(1530, 1548, 1577년)들이 일상적인 영역 즉, 교역, 독과점, 관세, 도량형, 무게, 가격, 직업교육, 일상적인 행동들 -사치의 금지, 조합, 계약, 풍속, 종교의식, 유언, 상속

2) Württemberg/Heckermann/Riggert, Polizeirecht in Baden-Württemberg, 2. Auflage, 1994, S. 1 f.

3) Scholler/Schloer, Grundzüge des Polizei- und Ordnungsre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4. Auflage, 1993, S. 1 f.

등- 이 경찰의 규율대상화 되었다. 수많은 도시들과 지방국가들에서 비슷한 경찰 개념이 사용되었다. 당시에는 이러한 영역들이 경찰 사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公法的인 영역과 私法的인 영역의 구분이 불명확하였다.

17세기에 중엽에 이르자 일반적인 복지(allgemeine Wohlfahrt)의 충족이야말로 국가의 목적이라고 이해되었으며, 이것은 절대국가의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군무행정, 재무행정, 법무행정 등이 내무행정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⁴⁾

18세기까지 경찰개념은 공동체의 이상적인 질서상태라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상적인 질서상태에는 위험방지(Gefahrenabwehr)라는 측면과 복지증진(Wohlfahrtspflege)이라는 두 요소가 포함되었다.⁵⁾ 절대국가 시절에는 경찰개념의 적용영역이 거의 무제한적이었다.⁶⁾ 이러한 절대국가 개념하에서는 광범위한 행정상의 권한이 경찰에게 부여되었으며,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까지를 경찰의 영역으로 인정하여 왔다.

절대국가 시절에는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찰의 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 당시 경찰권(Polizeigewalt)은 법적인 토대를 갖지 않고서도 행사되었으며, 警察權은 절대왕권의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⁷⁾ 이 시기의 특징은 보다 나은 공적 영역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私的 영역을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찰국가(Polizeistaat)가 탄생하였다. 흔히 독일을 경찰국가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 바, 이 시기의 경찰권(개념)이 광범위한 영역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계몽시대(Aufklärungszeit)를 거치면서 경찰개념이 위험방지라는 측면으로 제한되기 시작했다.⁸⁾ 위험방지 임무와 복지증진 사무가 명백하게 분리되어졌다. 경찰에 관한 새로운 모습이 프로이센제국의 1794년 一般州法(Preußisches Allgemeines Landrecht: Proß. ALR) 2장 17부(Titel) 10조에서 일찌기 법령으로 규정되었다.

“공적인 평온과 안전, 질서의 유지와 공동체 또는 개별시민들이 직면하는 위협의 방지를 위

4) Scholler/Schloer, 1993, S. 1. f.

5) Knemeyer, Polizei- und Ordnungsrecht, 6. Auflage, 1995, S. 3 f.

6) Schmidt-Aßmann (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10. Auflage, 1995, S. 108 f.

7) Scholler/Schloer, 1993, S. 1.

8) Schmidt-Aßmann (Hrsg.), 1995, S. 108.

해 필요한 공공의 조직은 경찰관청이다”

이로써 위험방지임무가 경찰의 임무로 규정되었지만 계몽시대를 지나 19세기에 이르기 까지 경찰의 업무영역에서 복지사무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그러다가 1882년 6월 14일 유명한 프로이센 州고등행정재판소(OVG)의 크로이츠베르크판결(Kreuzberg Urteil)을 계기로 경찰작용의 영역에서 복지행정적 요소가 제외되고 위험방지(Gefahrenabwehr)라는 영역으로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동판결의 내용은 경찰 임무의 영역을 안전과 질서의 보호(Schutz von Sicherheit und Ordnung), 즉 위험방지라는 것이다.⁹⁾

20세기에 이르러 법치국가적 경찰법을 확립하는 계기로써,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Preußisches Polizeiverwaltungsgesetz vom 1. 6. 1931) 제 14조에서는 위험방지에 관한 일반조항적 의미를 가진 경찰개념에 근거를 둔 실질적 경찰권을 규정하였다.

“경찰관청은 유효한 법의 영역안에서 의무합치적 재량에 따라서 일반적 또는 개별적인 위험한 요소들에 의하여 공적 안전과 질서가 위협받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오랫동안 법치주의적, 지방분권적 형태로 유지되었던 독일 경찰제도가 1933년 이후 나찌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법치주의적 경찰제도의 파괴와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을 경험하게 된다. 그후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서방 3개국(영국, 프랑스, 미국)과 소련의 일시 점령기간을 거치면서 점령국 경찰제도의 영향아래 탈경찰화(Entpolizeichung)가 추진되었다. 물론 소련이 점령한 동독지역에서는 소련식의 경찰체제가 통일전까지 유지되었다. 경찰 (Polizeibehörde)과 非경찰(Nicht-Polizei Behörde oder Ordnungsbehörde)간의 분리는 점령당국의 탈경찰화 정책에 의하여 점령지역별로 이루어졌다.

이후 공권력 행사의 형태가 전문화, 다양화해짐에 따라 위험방지에 관한 규정은 경찰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질서위반법, 도로교통법, 집회와결사에관한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었다. 우리식의 제복착용한 경찰을 의미하는 일반집행경찰 (Vollzugspolizei oder Polizeivollzugsdienst)은 급박한 위험의 방지에 한에서 관할권을 가지며, 일반적인 위험방지 임무는 내무행정을 맡고 있는 다른 (질서)관청의 업무화 되었다.

9) 임준태, “독일경찰제도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제도공청회, 치안연구소, 1998, p. 645.

제2절 경찰제도

독일(Bundesrepublik Deutschland: BRD)은 통독 후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체제이다. (1999년 8월말 현재, 인구는 약 82,000,000명, 면적은 350,000km²이다.¹⁰⁾

독일에서의 경찰권과 사무는 원칙적으로 연방 헌법에 의하면 각주의 사무(Ländersache)이자 권한이다.¹¹⁾ 따라서 경찰체제는 분권화된 체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경찰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면이 많이 있는 바, 예를 들면 경찰사무에 관하여 각주는 개별적, 독자적인 입법권을 갖고 있다. 주마다 각기 다른 경찰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각주의 경찰법은 연방법과 同位의 위상을 갖고 있다.

각주들은 경찰개념(실질적, 형식적, 조직적·제도적 의미의 경찰개념 등)에 대해 다르게 理解한 까닭으로 약간씩 다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 집행경찰(Vollzugspolizei)과 질서(행정)관청간의 분리

가. 단일형 (Einheitssystem)

몇몇 주(Baden-Württemberg, Bremen, Saarland, Sachsen)에서는 모든 위험방지업무가 경찰 (Polizei)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행정경찰(Verwaltungspolizei)과 전통적인 집행경찰(Vollzugspolizei)간에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¹²⁾ 공적인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행정경찰이 감시할 권한이 있으며, 행정경찰에 의해 적시에 조치될 수 없는 위험의 발생, 즉 급박한 위험발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집행경찰의 임무로 귀착된다.

나. 분리형 (Trennungssystem)

그 밖의 모든 주에서는 경찰의 관할권이 위험방지의 영역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급박한 위험발생이나 특별한 관할에 한정되어졌다.¹³⁾

일반적인 위험방지 임무는 질서관청에 부여되어 있는 바, 이들의 명칭은 질서청(Sicherheitsbehörde: 바이에른州), 행정관청 (Verwaltungsbehörde: 함부르크, 니더작센, 작센안할트州), 위험방기관청(Gefahrenabwehrbehörde: 헤센州) 등의 명칭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2. 경찰조직

10) 1999년 8월말 현재, 인구는 약 82,000,000명, 면적은 350,000km²이다.

11) Art. 30 Grundgesetz (Funktion der Länder), Art. 70 GG (Gesetzgebung des Bundes und Länder).

12) Müller/Wilhelm,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4. Auflage, 1995, S. 7.

13) Müller/Wilhelm, S. 7.

원칙적으로 경찰사무는 각주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산하의 경찰조직은 제한적인 영역에 한하여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

가. 연방 경찰조직 및 교육기관

대표적인 연방경찰조직으로는 연방수사국(Bundeskriminalamt), 연방헌법보호청(Amt für Verfassungsschutz), 연방국경수비대(Bundesgrenzschutz) 등이 있다.¹⁴⁾ 연방경찰에 속하는 경찰관들은 연방공무원대학 경찰학부, 연방국경수비대 경찰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각주에서 선발된 고급간부 후보생들을 2년간 교육시키고, 사법시험 합격자를 경찰직에 특별채용하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연방경찰대학원(Polizeiführungsakademie: PFA, 연방경찰관리자학교)이 연방경찰 교육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나. 州경찰조직

각주의 경찰조직으로는 일반예방경찰

(Schutzpolizei: 경무, 교통, 경비, 방범업무 담당), 수사경찰(Kriminalpolizei), 수상경찰(Wasserschutzpolizei: 해양경찰과 유사), 기동경찰(Bereitschaftspolizei) 조직이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단위의 경찰교육기관들은 경찰학교 (Polizeischule), 경찰대학(학부)(Fachhochschule für Polizei) 등이다.

제3장 독일경찰 교육제도

제1절 서설

독일 경찰관들이 경찰직으로 채용, 충원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순경급 신입과정(공채), 주경찰대학(Polizeifachhochschule) 과정(졸업 후 경위급 초급간부로 임용) 및 연방경찰대학원 과정(졸업 후 경정급 고급간부로 임용)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장, 경사 특채제도는 없지만, 법과대학 출신의 사법시험 합격자(Juristen)를 경정급 고급간부로 특채하는 제도는 일반화되어 있다.¹⁵⁾

14) 상세한 내용은 임준태의 전제논문을 참조.

15) 독일에서는 법과대학 출신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률품가들이 일반행정직 고급 공무원으로 많이 특채, 임명되고 있다. 부이사관급(3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대부분은 법률품가 출신이다. 경찰의 경우, 연방수사국장, 부국장, 주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급, 주범죄수사국장, 주기동경찰국장들은 전원 법률품가 출신이다. 특히 연방수사국에 근무하는 전체경찰관의 약 18%가 사법시험을 합격한 법률품가 출신이라 하며, 현재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경찰청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을 지닌 자임.

순경급 신입과정은 대체로 非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선발,¹⁶⁾

경찰대학 과정은 인문계 고등학교(Gymnasium) 졸업자 중에서 선발, 경찰대학원 과정은 고참 경위급(10년 전후) 현직 경찰관을 각주별로 선발하여 연방 경찰교육기관(Polizeiführungsakademie: PFA)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경찰직으로의 入職경로는 비교적 단순하다.

각주별로 약간씩 다른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 단위의 경찰노동조합이나 연방정부의 영향으로 교육방식과 체제면에 있어서 대체로 비슷한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연방경찰관리자학교(PFA)과정을 통하여 분권화된 경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도 한다.

본장에서는 필자가 실무 수습시 경험한 독일 남부지역의 바덴-뷔르템베르크 州경찰학교

와 州경찰대학(Fachhochschule für Polizei in Baden-Württemberg)¹⁷⁾의 상황을 중심으로 독일경찰 교육제도를 소개하기로 한다.

제2절 순경급 신입경찰관 채용 및 교육과정¹⁸⁾

1. 바덴-뷔르템베르크 州경찰

가. 선발시 조건들

(1) 전제조건

독일국적자, 신체건강,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신봉,

학력: 중급 직업훈련과정이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연령: 남녀불문 16.5세 이상- 25세 미만

신장: 남녀불문 165cm 이상

16) 독일 경찰의 입직경로는 교육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순경급 경찰관 신규임용과정에 4년제 대학의 졸업생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이다. 독일경찰의 입직경로는 학력에 따라 차별적 선발과정을 유지하고 있다. 반드시 경찰대학을 졸업해야 경위급간부로 임용되고, 경찰대학원을 졸업해야 고급간부로 임용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따라서 순경급=비인문계고등학교졸업, 경위급=人文高卒後 경찰대학졸업, 경정급= 경찰대학원졸업이라는 등식으로 이루어졌다.

17)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인구 약 10,400,000명, 면적은 남한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35,000km²이며, 同州는 독일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주이며, 1998년말 현재 경찰관은 약 27,000여명,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기능직 직원은 약 8000여명이다. 이주의 인구는 스위스 전체인구(7,200,000명) 보다 더 많다. 따라서 독일경찰 교육제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同州의 상황은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8) 1998년판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관 지원안내서 참조. (광고문안 Entscheidung fürs Leben/ Polizei. Der Beruf. So interessant wie das Leben.)

자동차 운전면허(2종보통) 취득자(없으면 교육기간중 자비로 취득),

(2) 제출서류

이력서, 출생증명서, 졸업증명서, 직업훈련 증명서,

수영실력증명서(남녀 모두: 200m를 6분40초 이내에 도달)

경찰관 지원서 등

나. 선발 방법

선발 시험은 이틀간에 걸쳐 치뤄지는 바,

제1일에는 필기시험(받아쓰기, 지능검사, 사고력, 창조성 테스트 등)과 면접(표현력, 대화법 등)

제2일에는 신체검사(약물복용 여부 검사 등) 및 체력테스트(멀리뛰기, 투포환던지기, 2000m 달리기 등 세가지 종목)가 각각 실시된다.

다. 교육기관 및 기간

매년 주경찰의 상황을 고려, 연2회(6월말, 12월말)에 걸쳐 약 1200명 정도 선발한다고 함. 선발된 학생들은 주기동경찰국 산하 5개 지역 경찰학교에서 25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주경찰학교(Landespolizeischule)에서 순학생들을 상대로 5개월간 교육을 실시한다¹⁹⁾(총 교육기간은 30개월).

주에 따라서는 순경급 신입경찰관 교육기간이 적게는 24개월, 많게는 42개월간(연방경찰의 경우)이다. 독일 각주(16개주) 경찰학교에서의 평균 교육기간은 3년 정도이다.²⁰⁾

라.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²¹⁾

신입 순경급 경찰관 교육의 방향은 6개월간의 기본교육, 6개월간의 실습, 18개월간 범죄대책, 교통사고조사, 방법순찰분야에 대해 이론 및 실무강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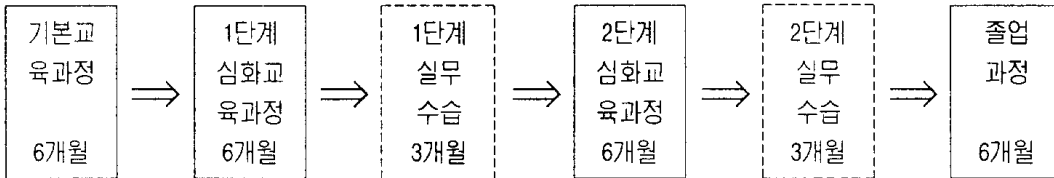
19) 필자가 주경찰학교를 방문했을 당시(1997년 6월), 1개 班은 26명의 학생으로 편성되어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매회 경찰학교 입학생은 평균 20개 반이라 함.

20) Rupprecht, Rheinhard (Hrsg.), Polizei Lexikon, 2. Auflage, 1995, S. 356 f.

21) Bereitschaftspolizeiabteilung Lahr (in Baden-Württemberg), Die Ausbildung zum mittleren Dienst (Dokumentation 1998).

22) 주경찰학교가 순경급 경찰관을 신규임용시 실시하는 기본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1998년 작성, 소개한 (공문서 등)자료의 일부이다.

그림1) 순경급 신규교육과정 흐름도



● 기본교육(Grundkurs, 6개월)

일반교양분야(Allgemeinebildung): 영어 또는 프랑스어, 독일어, 컴퓨터교육, 타자연습

사회학관련 분야(Gesellschaftslehre, Politische Bildung)

- 헌법관련 내용(통치기구론, 헌법기본원칙, 국가권력과 기본권, 인권, 평등의 원칙, 표현의 자유, 기본권에 의한 제한, 정치사 등)
- 심리학분야 (심리학개론, 세미나, 성격형성에 관한 세미나, 인지론, 갈등해결론-스트레스, 갈등, 의사소통, 집단토의, 공격대응 훈련)
- 행정학, 직업윤리(Berufsethik)

법률학 분야(Recht)

- 경찰법(Polizeirecht)
- 형사소송법(Strafproze recht), 질서위반법 (Ordnungswidrigkeitenrecht)
- 형법(Strafrecht), 민법(Zivilrecht), 도로교통법(Verkehrsrecht)
- 공무원법(fentliches Dienstrecht)

범죄수사학 분야(Kriminalistik und Polizeitaktik)

- 범죄수사 전략론(Kriminaltaktik), 과학수사방법(기법)론(Kriminaltechnik)
- (수사)경찰작전론

경찰작전 및 체력단련 (Einsatztraining/Sport)

- 자기방어훈련(호신술 등)
- 강제수단(Zwangsmitteltraining) 및 사격술훈련 (권총 및 기관총)
- 경찰경비작전(무전기 사용법 등), 체력단련, 수영 및 인명구조법
- 응급처치법 분야 등

● 1단계 심화 교육(Aufbaukurs I, 6개월)

범죄대책분야 (Kriminalitätsbekämpfung)

피의자 상대: 피의자 신문, 증거보전, 상해죄수사, 범죄정보처리

증인상대: 증인신문, 보호 및 긴급전화 처리요령

교통사고조사, 교통통제 및 감시분야 (Verkehrsunfallaufnahme und- Überwachung)

차량통제- 수신호, 차량통제, 인적·물적수배,

교통감시-감시조치 및 기법, 도로교통상의 안전확보, 감시대상 인지,

주요교통사고 요인에 교육- 교통사고대책, 보행자사고 대책,

우선통행 방법, 속도통제, 차간거리 유지, 추월방법

차량통제후의 조치- 범칙금부과절차,

방법순찰 분야 (Die Streife)

경찰강제-행정행위, 강제수단의 사용, 침해적 행정행위

(위험방지를 위한) 신원확인 조치-보호조치, 자료수집 및 가치평가,

경찰법상의 신원확인 조치, 형사소송법상의 신원확인조치,

행패부리는 쯤 처리, 청소년 선도, 음주자 처리, 주거부정자 처리

● 실습과정 (Praktikum I, 3개월)

기히 습득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실무에서 응용과정이다.

학생들은 거주지 인접 경찰관서(경찰서, 지구경찰서)의 방법순찰부서, 교통과, 경비과 등에서 실습한다.

● 2단계 심화교육 (AufbaukursII, 6개월)

복잡하고 심도 깊은 내용을 익히는 과정이다. 1단계 심화교육 방향과 동일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이 실시되는 바,

범죄대책분야

재산범죄수사-현장수사활동, 소매치기 및 손괴죄 수사
자유박탈처분- 긴급체포, 피의자 유치, 미결수 호송

교통사고조사 및 통제분야

교통사고접수 과정-교통사고 접수, 피해자와 대화, 증거보전, 검문 및 신문 교통사고현장에서 조사활동

방법순찰분야

침입행위에 대한 처리-엿보기 행위처리, 경보장치에 의한 신고처리
소음유발 행위에 대한 처리, 가족간 또는 이웃간의 싸움에 대한 처리

● 실습과정 (Praktikum II, 3개월)

전 항의 실습 내용과 비슷

● 졸업과정 (Abschlußkurs, 6개월)

범죄대책분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수사- 모욕행위, 공무집행시 저항, 모욕행위자나 공무집행시 저항자와 대화 방법
약물범죄, 무기 및 총기관련 범죄, 사기범죄, 강도범죄 수사
긴급체포 및 수배, 차단조치, 수색 및 압수조치

교통사고조사 및 교통통제 분야

교통관련 허가 업무 - 추적운전, 차량운전 숙련, 도로교통상의 위험성, 국제적 도로교통상의 허가, 사람과 물건의
운송에 대한 허가

방법순찰분야

(경찰법상) 외국인처리- 망명자처리, 인점국민 처리, 외국인 여행자처리

기타: 졸업시험

(2) 교과별 수업시간²³⁾

아래 교과목 및 수업시간은 18개월(기본교육과정 6개월, 1, 2단계 심화과정 12개월)간 주 기동경찰국 산하 5개 지역경찰학교에서 실시 되는 이론(Theorie) 및 실무분야(Praxis) 교육 시간이며, 동기간중의 교육시간은 약 2,816 시간이다. 이중 이론 및 실무강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56.3%, 실습 및 훈련은 34.4%, 기타는 약 9.3%이다. 실무수습 6개월과 졸업과정 6개월(주경찰학교에서 실시)등 12개월간의 교과 시간 및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경찰법(205시간), 형사소송법(104), 형법 및 질서위반법(124), 도로교통법(205), 공무원법(18) 등 법률학 수업시간은 총 656시간이다.²⁴⁾ 이중 경찰법(Polizeirecht)에 할애된 수업시간이 205시간이나 되는 바, 독일경찰 교육에서 경찰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법률과목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독일경찰의 역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경찰의 한 특색이라 할 수 있다.

표1: 순경급 신규교육과정중 교과별 수업시간
(기본교육과정과 심화과정 12단계의 18개월간)

이론분야 (Theorie)	총 1585시간
정치학, 사회학 관련	193
경찰법	205
형사소송법 및 질서위반법(절차법)	104
형법 및 질서위반법	124
도로교통법	205
경찰문서관리 및 작성	224
심리학	100
공무원법	18
경찰작전 경비론	54
정보 및 의사소통 기법론	27
독일어	124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중 택1)	100
타자훈련 및 이론	58
응급처치	22
직업윤리	27
경찰실무분야	총 968시간
경비작전 및 훈련	166
태도 및 행동훈련	290

23)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 in Bereitschaftspolizeipräsidium (Baden-Württemberg), Dokumentation (Stand: 24.11.97).

24) 이에 반하여, 99년도 한국의 순경급 경찰관 신입교육과정(16주)의 법학분야 교과목 수업시간은 법학개론 5, 헌법3, 경찰행정법 10, 형법 33, 형사소송법 15시간으로 도합 66시간이다. 이에 반하여 제식훈련49, 체육29, 산악훈련 25, 무도 53시간 등 체력훈련시간은 도합 156시간이다. 현행 순경급 경찰관 채용시험의 기준은 고졸학력자인 것을 감안하면, 법률과목 수업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경찰교육의 목표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양성인지, 신체 튼튼한 경찰관 양성인지 구분이 안 간다. 뿐만 아니라 4개월 교육기간도 짧은 데, 그 짧은 교육기간 동안 체력훈련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격훈련	228
일반 체육훈련	214
수영 및 인명구조	50
호신술	60
운전연습	160
기타	263시간
예습 및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총 2,816시간

필기시험, 신체검사(약물복용 여부검사 포함), 면접, 체력검사 등을 통해 선발한다

다. 교육기관 및 기간

신규 임용 교육은 주기동경찰국 산하 경찰 학교에서 약 30개월간 실시된다.

라. 교육과정 및 교과 내용

● 1단계 교육 (12개월)

법률과목 및 교양과목: 경찰법, 도로교통법, 형법, 공무원법, 정치학개론, 영어, 직업윤리
경찰실무과목: 경찰경비작전, 경찰문서작성, 스포츠, 호신술, 무기화약취급 및 사격, 대화기법, 갈등해결방법, 전산연수, 자동차운전 연습, 응급조치

● 2단계 교육 (12개월)

실무과목: 자기방어훈련이 집중 실시
법률 및 교양과목: 1단계 교육과정에서의 내용이 심화된다
그 외에 추가 내용은 공공질서에 관한 특별법, 수사기법(방법)론
3개월간의 실무수습이 경찰관서에서 이루어진다.

2. 바이에른주 경찰

가. 선발시 조건들

독일국적 소지자로서,
학력: 인문계 고등학교, 직업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연령: 17세 이상 -26세 미만

신장: 남녀불문 160cm 이상

수영실력증명서 소지,
전과경력 없어야, 신체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제출서류 등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경찰과 유사

나. 선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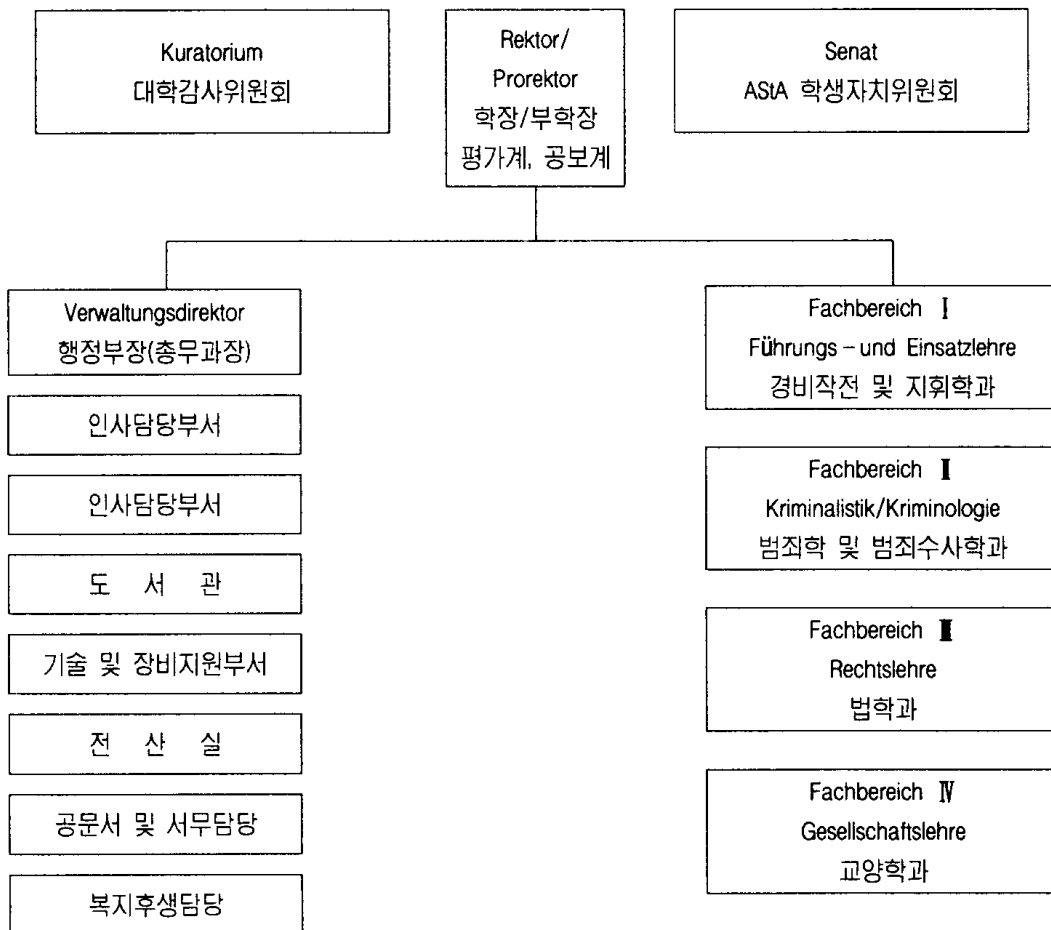
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경찰대학 (Fachhochschule für Polizei)

가. 주경찰대학 소개²⁹⁾

주경찰대학은 1979년 4월 24일자 경찰대학

설치에 관한 주정부의 법령에 의거, 설립되었다. 동교에는 약 1300여명의 경찰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1996년말 현재, 66명의 교수 및 교관과 77명의 행정직원(경찰관, 일반직 공무원 등)들이 근무하고 있다. 매년 약 400명씩 선발되어 총

그림2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경찰대학 조직



29)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경찰대학의 1998년 입학생들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찰대학생은 주기동경찰국과 주경찰학교에서 14개월간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4개월간 관실습을 각각 마친 후, 주경찰대학에서 36개월간 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총 54개월간 경찰교육을 받게 되는 셈이다.

30) Fachhochschule Villingen-Schwenningen Hochschule für Polizei, Jahresbericht '96, 참조.

12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學長 (Rektor)은 경찰관이 아닌 하이델베르크대학과 튀빙겐 (Tübingen)대학 출신의 범죄학 교수이며, 1999년 8월 현재, 동교에 재직한 지 7년째라고 한다.

副學長(Prorektor)은 (수사) 총경급 경찰관이다.

(1) 조직 및 편제

경찰대학의 조직은 행정지원부서(Verwaltung)와 경비작전 및 지휘학과, 범죄학 및 범죄수사학과, 법학과, 교양학과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2) 학과별 교과목 및 교수, 교관수

① 경비작전 및 지휘학과 (Fachbereich I: Führungslernlehre u. Einsatzlehre)

경찰지휘론(교관 3명)
경비작전론(교관 6명)
도로교통법 및 교통학(교관 6명)
스포츠, 사격 (교관 3명)

② 범죄학 및 범죄수사학과 (Fachbereich

II: Kriminalistik u. Kriminologie)³¹⁾

범죄수사전략론 (교관 5명)
범죄수사기법(과학수사방법)론 (교관 3명)
범죄학 (교관 3명, 교수 2명)

③ 법학과 (Fachbereich III: Rechtslehre/Rechtswissenschaften)

헌법 및 통치기구론 (교수 5명)
경찰법, 행정법 (교수 9명)
형사소송법, 질서위반법(절차관련) (교수 6명)
형법, 질서위반법 (교수 4명)
공무원법 등 (교수 4명)

④ 교양학과 (Fachbereich IV: Gesellschaftslehre/Sozialwissenschaft)

사회학, 심리학 (교수 5명, 외래강사 1명)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전산론, 직업윤리, 연구방법론 (교수 2명, 외래강사 2명)

(3) 학생(교내)생활 방식과 복지

학생들은 하루 평균 6시간 (주 30시간) 정도의 수업을 받고 있으며, 학생 전원은 1인1실

31) 교관중에는 부학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수중에는 학장도 포함되었음. 동경찰대학의 학장, 부학장은 범죄학강의를 일반 교수, 교관처럼 직접 실시하고 있었음.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교내에서 기숙사내에서 음주, 흡연은 허용된다. 수업시간 이후에는 자유시간이며, 수업은 월-금요일 오전까지 진행된다. 학생지도를 위한 별도의 부서는 없다.³²⁾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경우, 재학중 매월 경위급 초봉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비간부(일반직원)출신 경찰관중에서 선발된 경찰대학생들은³³⁾ 대학 입학전 계급의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식비, 교재비 등은 본인 부담이다. 교내에서는 제복을 착용하지 않으며, 관서실습 기간 중에는 제복을 착용한다.

나. 경찰대학생 선발과정

(1) 선발시 전제조건들

학력: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Abitur)이나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졸업성적: 3.0 이상

연령: 최고 31세까지

신장조건: 남녀불문 165cm 이상

지원서류: 일반직원 선발시와 비슷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직원 출신 대학생들은 경찰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 근무성적 양호한 者로서 관서장의 추천을 거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선발방법

선발방식 (필기시험, 면접, 신체검사, 체력테스트 등)은 순경급 신입 경찰관 선발시와 유사하다. 선발인원은 보통 400여명인 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원자 중에서 100-150여명을, 일반직원 출신 지원자 중에서 300여명을 각각 선발한다.³⁴⁾ 바덴-뷔르템베르크주경찰대학을 비롯하여 독일 대부분의 주경찰대학에서는 비간부출신 경찰관과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함께 선발하고 있다.³⁵⁾

32) 한국의 경찰대학에는 학생지도부(부장은 경무관급)라는 직제가 있으며,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33) 비간부(일반직원)출신 경찰대학생들은 본인의 계급과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학생활을 한다.

34) 대학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일반직원 출신 지원자들간의 경쟁률은 보통 10:1 정도되며, 매년 2500-3000여명의 비간부(일반)경찰관들이 지원하고 있다함. 경찰대학생 선발시 인원규모는 주경찰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35) Rupprecht (Hrsg.), S. 224 f. 비간부경찰관(일반직원)들과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동시에 경찰대학생으로 선발하는 바, 일반직원 출신 대학생들에게는 주로 이론교육에 치중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에게는 실무와 이론교육이 동시에 강조된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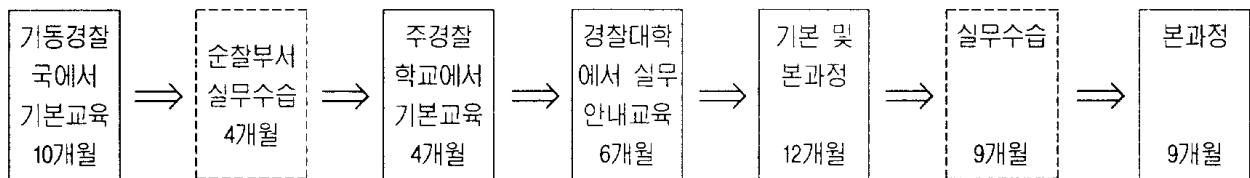
다. 교육기관 및 기간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찰대학생들은 주기동경찰국 산하 경찰학교에서 10개월간 기본교육, 4개월간 관서실습(순찰부서), 주경찰 학교에서 4개월간 기본교육 이수 후, 경찰대

학에 입학한다. 입학 후 36개월간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경우 도합 54개월간 경찰교육을 받는 셈이다.³⁶⁾

라.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

그림 3: 경찰대학 교육과정 흐름도



- 기본교육³⁷⁾ : 18개월 (Basisausbildung bei der Bereitschaftspolizei/ Streifendienst/ Landespolizeischule oder Vorausbildung bei der Bereitschaftspolizei)

주경찰학교, 기동경찰국 산하 경찰학교에서의 기본교육 내용은 순경급 신입 경찰관 교육내용과 거의 비슷하며, 주기동경찰국에서 10개월간 실시되는 기본교육의 내용과 배정된 수업시간은 표2와 같다.³⁸⁾

36) 그러나 주정부의 교육개혁 방침에 따라 1999년도 입학생부터는 실무수습 기간이 대폭 축소, 45개월간 교육을 받게 되고 함.

37) 1999년도 신입생에게 적용될 개정된 교과개편 내용에 의하면, 주기동경찰국 산하 경찰학교에서 실시되는 9개월 동안의 교육방향 및 주요 교과내용은 방법순찰분야, 교통사고조사 및 교통통제분야, 범죄대책분야 등 3개 분야라고 함.

38) BPP/Referat ffentlichkeitsarbeit in Baden-W rtemberg, Dokumentation(Stand: 14,11,97).

표2 경찰대학생의 주경찰학교에서 10개월간의 기본교육 내용

이론분야(Theorie) 강의	956시간
정치학	123시간
경찰법	142
형사소송법	60
형법 및 질서위반법	80
도로교통법	140
경찰문서작성 및 관리	156
심리학	74
공무원법	20
경찰경비론	16
전산론	27
독일어	30
타자 및 워드	50
응급조치	22
직업윤리	16
실무(훈련)분야	584시간
경비작전 훈련	98
태도 및 행동훈련	50
사격훈련	102
일반체육	134
수영 및 인명구조	30
호신술	50
운전연습	120
자율학습 등 기타	132
총 1,672시간이다.	

● **실무안내 교육** : 6개월(Einführungspraktikum FHPol) 경찰대학에서 경찰기본업무에 관해 안내 및 실습한다.

● **기본 및 본과정 교육** : 12개월 (Grund- und Hauptstudium I FHPol) 경찰대학에서 행정학, 법학분야(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공무원법, 도로교통법), 교양과목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범죄학, 범죄수사학, 실무과목 (교통, 경비, 방법, 경찰작전 분야)에 대한 이론(Theorie)강의 및 사격훈련.

일반직원 출신 경찰대학생들은 이 과정부터 입학,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 **관서실습** : 9개월 (Praktikum)

일반직원 출신 경찰대학생들은 전근무지로 배치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한 경찰대학생들은 거주지 인근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경찰서, 파출소 등)에 배치된다. 수사, 방법, 교통, 경비, 행정부서에서 3-4주간씩 돌아가면서 실습한다.

● **본과정 또는 중요과정 교육** : 9개월 (Hauptstudium II FHPol)

동기간에도 법학분야, 범죄수사학, 실무과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강의와 세미나가 실시, 개최된다. 교육기간 후반부에는 졸업시험 (Staatsexam)이 치러진다. 졸업시험에 합격한 후 경찰간부로 임용되며, 행정학학사 학위가 (Diplom-Verwaltungswirt Polizei) 수여된다.

마. 수사경찰과 일반예방경찰간의 분리지원 및 교육

경찰대학 3학년 과정부터는 수사경찰(Kriminalpolizei)을 지원하는 학생들과 일반예방경찰(Schutzpolizei: 방법, 교통, 경비, 행정부서 근무자)을 지원한 학생들간에는 전공분야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이 실시된다.³⁹⁾

예를 들면, 일반예방경찰을 지원한 학생들은 기동경찰근무(소대장근무), 순찰, 파출소 또는 지구경찰서 직할지 근무, 교통분야, 경제사범단속, 경비작전분야, 일반 수사업무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교육받으며, 수사경찰을 지원한 학생들은 일반 수사업무 뿐 만 아니라 수사기법론, 감식업무, 범죄정보처리, 주범죄수사국 산하 수사연구소에서 별도의 교육을 더 받게 된다.

졸업 후에는 수사경찰과 일반예방경찰간에 인사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진다.

바. 경찰대학생의 州경찰대학 캠퍼스에서의 교육내용

경찰대학생들에게는 경찰대학 캠퍼스에서 36개월 교육을 받는 동안 15개월간의 실무실습 기간과 21개월간 이론 및 실무강의로 이루어진 교육이 실시된다. 21개월간 실시되는 교육 중의 교과목 및 내용은 표3과 같다.⁴⁰⁾

총 2,336시간 중, 일반예방경찰을 지원한 학생들은 수사경찰을 지원한 학생들보다 도로교통법 강의를 219시간 더 수강하는 대신 범죄수사학과 범죄학 강의를 219시간 덜 수강한다. 경찰실무 분야에 대한 수업시간 배정비율은 47.3%, 법률학 24.1%, 교양과목 19.6%이며, 기타 8.9%이다.

39) 1997년의 경우,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대학생중 수사경찰을 지원한 학생이 전교육기간 동안 수강한 범죄학 수업시간은 386시간, 수사방법(기법)론은 146시간(합계 532시간)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예방경찰을 지원한 학생이 수강한 범죄학 및 수사방법론은 모두 313시간이었다.

40) Schulte (Hrsg.), Fachhochschulstudium für die Polizei in Baden-Württemberg, 2.

Auflage, 1991, S. 129 f.; 교과목 내용 및 수업시간 배정은 1994년 7월 21일에 공고된 "경찰대학 교육을 위한 강의계획의 수정에 관한 주교육부장관과 주내무부장관의 공지사항"에 의거한 것이다 (Gesetzblatt vom 31. August 1994).

표3: 경찰대학생의 주경찰대학 캠퍼스에서의 교과내용 및 시간배정

	총 2,336시간		
	일반예방경찰	공 통	수사경찰지원자
경찰실무 분야		1,106시간 (47.3%)	
경비·작전지휘론		365	
스포츠		115	
사격		94	
도로교통법 등		219	
범죄학			146
범죄수사학			386
범죄학·범죄수사학	313		
법률학분야		563시간 (24.1%)	
헌법		166	
경찰법·행정법		105	
형사소송법		84	
형법·질서위반법		125	
공무원법		83	
교양과목분야		459시간(19.6%)	
정치학관련		115	
심리학		146	
사회학		63	
경제학		31	
경영학		31	
전산론		52	
교육학		11	
연구방법론		10	
기타		208시간(8.9%)	

2. 바이에른주 경찰대학-경찰학부

가. 선발시 전제조건들

학력: 인문계 고등학교, 일반직업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기타 조건은 비간부경찰관 선발시와 동일,

나. 선발방식

필기시험과목의 내용:

바이에른주⁴¹⁾와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적, 국가적 토대에 관한 내용, 세계속에서 독일의 위상, 학문적인 기초질문,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중요하고 특별한 역사, 지리학에 대한 기본지식, 문화, 정치, 학문에 있어서 현대사적 성과 등이며 면접, 직무수행능력, 심리학적 테스트, 신체검사(약물복용검사 등), 체력 검사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 경찰학부의 교육방식, 기간 및 교과내용

주경찰학교에서 6개월, 주공무원대학 경찰학부에서 30개월 등 총36개월간 교육이 실시된다(동기간 중 12개월간의 실무수습이 경찰관서에서 이루어진다).

● 1단계 (12개월)과정

주기동경찰국 산하 경찰학교에서 6개월간 기본교육 실시

주공무원대학 경찰학부에서 6개월간 이론교육

이론교육은 법률학분야, 경찰실무분야, 교양 과목 등 순경급 신입경찰관 교육내용과 유사하다.

● 2단계 (12개월)과정

6개월: 경찰관서(방법, 교통, 순찰)에서 실무수습

하급직원들의 임무, 지휘, 감독자로서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훈련

6개월: 주공무원대학 경찰학부에서 이론교육

● 3단계 (12개월) 과정

3개월: 수사부서에서 전문수사간부로서의 임무 및 역할

15개월: 경찰서에서 실무수습- 경비, 작전 업무

15개월: 지방경찰청에서 경비, 작전분야 실무

6개월: 경찰학부에서 이론교육 및 졸업시험

41) 1998년말 현재, 同州는 인구 약 12,000,000명, 면적은 70,000km²이다 (남한면적의 70%).

1994년말 기준, 경찰관은 약 29,000명, 이중 기동경찰관은 약 5360 명이었다.

제4절 (연방)경찰대학원과정

1. 연방경찰대학원⁴²⁾(경찰관리자학교: Polizei-Führungsakademie)의 연혁 및 임무⁴³⁾

연방경찰대학원(Münster 소재)은 연방과 각 주의 고급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1945년 7월부터 개교하였다. 1947년 9월부터 연합국의 일원인 영국점령하 (Britische Militärregierung)에 놓이면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가 동교육기관을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1949년 8월부터는 영국점령지역이 아닌 다른 州경찰관들도 입학이 허용되었다. 그후 1962년 4월 17일 연방과 주에서는 동교육기관에 대한 “임무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며, 그후 급증하는 치안수요로 인하여, 1969년부터 초, 중급 경찰간부에 대한 교육문제는 각주에서 부담하게 되었다.

현재의 경찰대학원 존립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2년 4월28일 연방과 각주정부간에 합의,

발효된 “경찰고급간부양성을 위한 통일적인 후보생교육과 연방경찰관리자학교에 대한 협정”이다. 1992년 1월1일부터 법개정을 통하여 구동독지역의 5개주 경찰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학교에 대한 직무감독 (Fachaufsicht)은 연방과 각주정부 내무부장관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수행한다.

동학교는 연방 및 주경찰간부의 재교육, 전문교육과 경찰관련분야(치안정책) 연구의 중심기관(Zentralstelle)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고급경찰간부(경정급)로 지원한(임용예정) 者들에 대한 특별 교육(Sonderkurs)을 실시하기도 한다.

2. 경찰대학원 조직

동학교는 조직상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의 한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동학교의 교장(Präsident)⁴⁴⁾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42) 독일원문은 Polizei-Führungsakademie로써 경찰관리자학교라고 번역된다. 필자가 경찰대학원과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독일경찰 교육제도의 특성상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간부(고참 경위급)가 고급경찰간부(경정급)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방경찰관리자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고급간부 후보생들로 선발된 각주의 경찰간부들은 주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을 받은 후 연방경찰관리자 학교에서 1년간 추가교육을 받고 졸업해야 고급간부(경정급)로 임명된다. 따라서 대학졸업 이후의 교육과정(각주경찰대학 1년, 연방경찰관리자학교 1년: 도합 2년과정)을 우리 나라의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리자학교의 1년간의 교육과정과 주경찰대학에서의 1년간은 교육과정을 동계, 하계방학없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대학원 석사과정보다 수업시간이 더 많다. 본고에서 경찰대학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3) Rupprecht (Hrsg.), S. 406 ff.

州 정부가 연방 및 각주 내무부장관들로 구성된 협의회(Kuratorium)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경찰대학원 조직은 크게 행정지원부서와 교학부로 구성되어 있는 바,

● 행정지원부서의 소관 업무 및 조직으로는 경찰관 신규임용 교육課(Allgemeine Angelegenheiten der Ausbildung), 경찰관 再教育課(Allgemeine Angelegenheiten der Fortbildung), 시청각교재 및 교수기법 연구부서(Fachdidaktik, Medientechnik), 출판 및 대외협력부서(Auslandsbeziehungen, Veröffentlichung), 도서관 및 警察史料 관리부서(Bibliothek mit Polizeigeschichtlicher Sammlung), 일반행정부서(Verwaltung)가 각각 편제되어 있다.

● 교학부(교수부)⁴⁴⁾에는
경찰지휘학과 (Führungslehre)
경찰경비, 작전학과 (Einsatzleh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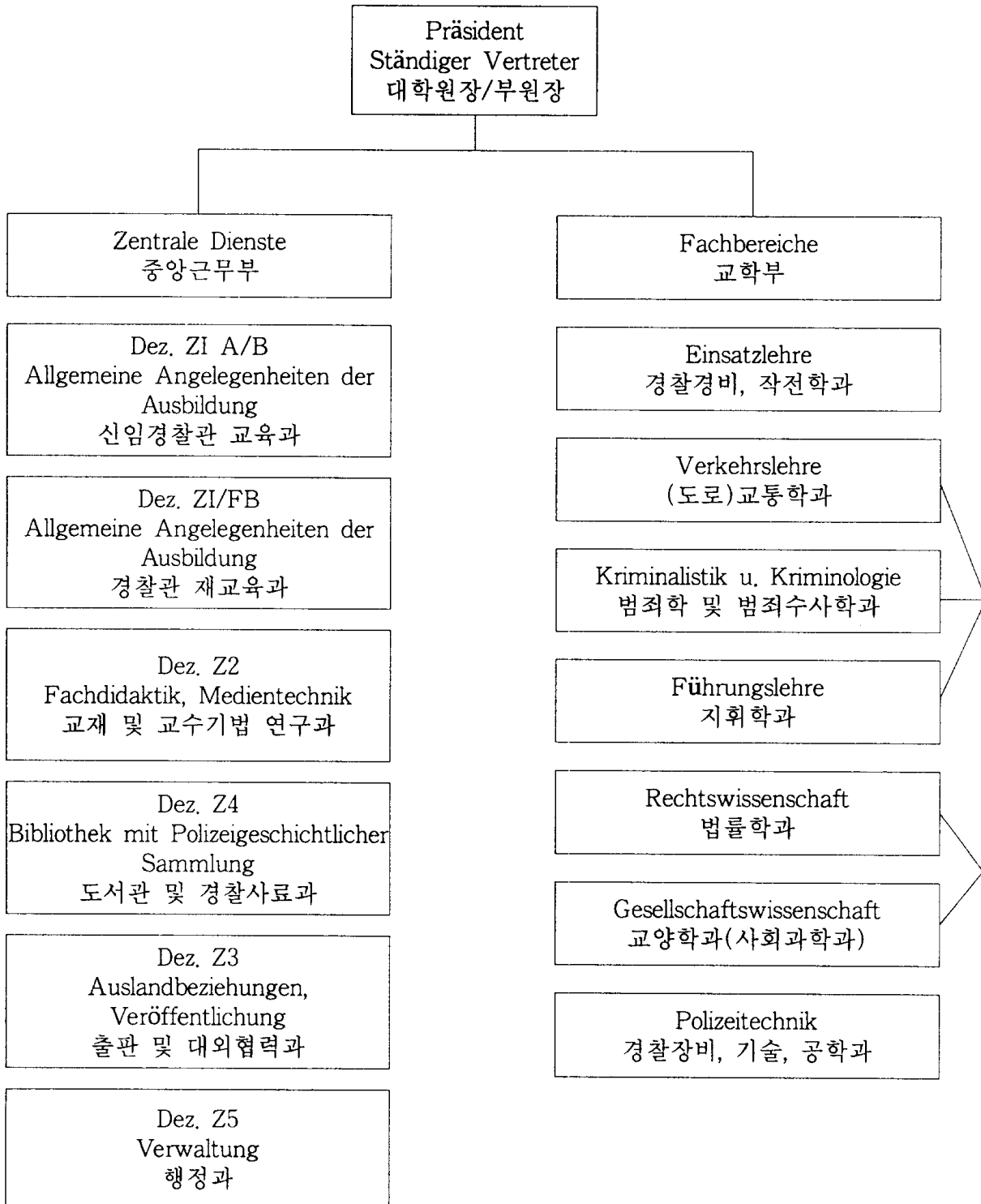
(도로)교통학과 (Verkehrslehre)
범죄학 및 범죄수사학과 (Kriminalistik u. Kriminologie)
법학과 (Rechtswissenschaft)
교양학과(사회과학과, Gesellschaftswissenschaft)
장비, 기술 및 공학과 (Polizeitechnik) 등이 있다.

44) 대학원장(Präsident)에는 전통적으로 법과대학 교수나 판·검사 출신의 법률가(Jurist)가 임명되고 있다. 1998년 11월 현재, 대학원장은 1990년 5월1일 임명되어 재직중인 Rainer Schult박사이다.

45) Aktuelles aus der Polizei-Führungsakademie, in: Die Polizei 1998, S. 303 f.

1998년 8월1일 경찰대학원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지휘학과는 지휘, 조직 및 행정학부 (Fachbereich I-Führung, Organisations u. Verwaltungswissenschaften, 부장은 총경급)라는 명칭으로, 경비·작전학과, (도로)교통학과, 범죄학·범죄수사학과는 합쳐져서 경찰관리학부(Fachbereich II-Polizeiliches Management, 부장은 고참 총경급) 라는 명칭으로, 법학과와 교양학과는 합쳐져서 법학 및 교양학부 (Fachbereich III- Rechts- u. Sozialwissenschaft, 부장은 교수)라는 명칭으로 각각 바뀌었으며, 경찰장비, 기술, 공학과는 경찰공학연구소 (Polizeitechnisches Institut)로 바뀌었다.

그림4 : 연방경찰대학원 조직(Organigramm der Polizei-Führungsakademie)



3. 경찰대학원(PFA)생 선발, 교육방식 및 학생현황

각주에서는 경찰관 정원, 치안사정, 주정부의 재정상태, 경찰인사정책에⁴⁶⁾ 따라 매년 고급 경찰간부(경정급)를 선발하고 있다. 독일 경찰의 경우, 해마다 초급간부(경찰대학 입학예정자)와 고급간부(경찰대학원 입학예정자)로의 승진예정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정부의 재정상태가 많이 고려된다고 한다.

주경찰단위에서 고급간부 후보생(대학원 입학예정자)으로 선발된 자는 1년간 주경찰대학이나 경찰학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이듬해 9월 경찰대학원에 입학하여 추가로 1년간 교육을 받게 된다. 2년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고급 경찰간부(Polizeirat oder Kriminalrat)로 임명된다.

교육방식은 주경찰대학과 경찰대학원의 교

과목 편성에 따라 진행되며, 교과목은 기히 소개된 바와 같이 법률학, 교양과목, 경찰지휘론, 경찰실무(경비, 수사, 교통)에 관한 내용들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수업방식은 강의, 세미나, 사례연구, 개별연구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1996년 9월-1998년 8월까지 경찰대학원 과정에 재학했던 대학원생(고급간부후보생)은 모두 192명이었으며, 1997년 9월-1999년 8월까지 동대학원 과정 입학생은 177명이었고 이중 여자경찰관은 12명이었다. 1998년 10월 현재, 각주별로 3-38명씩 선발되어 경찰대학원에 재학중이다.⁴⁷⁾

4. 전임교수 및 교관 현황⁴⁸⁾

40여명의 전임교수, 교관진이 각주에서 선발된 경찰대학원생 200여명을 가르치고 있다.

46) 일반예방경찰(방법, 경비, 교통등)과 수사경찰은 인사상 분리되어 있다. 일반예방경찰의 (Schutzpolizei) 경우, 간부경찰관의 비율이 주에 따라서 15-25% 정도이지만, 수사경찰(Kriminalpolizei)의 경우는 간부경찰관의 비율이 50-100%를 차지하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많은 경찰관들이 수사경찰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부경찰관은 반드시 경찰대학과정을 수료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수사경찰의 간부화는 수사경찰의 자질향상과 직결된 문제이다.

47) Die Polizei 1998, S. 304: 연방국경수비대: 14명, 연방수사국: 7명, Baden-Württemberg州: 22명, Bayern: 18명, Berlin: 13명, Brandenburg: 8명, Bremen: 6명, Hamburg: 5명, Hessen: 9명, Mecklenburg-Vorpommern: 6명, Niedersachsen: 8명, Nordrhein-Westfalen: 38명(인구-약 18,000,000명-와 경찰관이 가장 많은 주), Rheinland-Pfalz: 4명, Sachsen: 4명, Sachsen-Anhalt: 4명, Schleswig-Holstein: 3명, Thüringen: 5명 등이다.

48) Die Polizei 1998, S. 321. 전임교수, 교관진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법률학 분야를 강의하는 외래강사(교수)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경정, 총경급 교관 중에는 법률가 출신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경찰대학원 교수·교관진 현황

<p>1998년 11월 현재, 대학원장 1명, 부원장 1명(총경급), 강사2명 (신학박사인 목사1*, 정치학박사1)</p> <p>행정지원부서(중앙근무부)의 과장 6명 (총경급 2명, 행정직 서기관급 2명, 사서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p> <p>교학부에 근무하는 교수, 교관진 지휘, 조직, 행정학부(Fachbereich I: Führung, Organisations- u. Verwaltungswissenschaften): 총경 3명, 수사경정 2명, 행정사무관 1명(박사)</p> <p>경찰관리학부(Fachbereich II: Polizeiliches Management): 총경 9명, 경정 6명, 서기관 1명(박사)</p> <p>법률학 및 교양학부(Fachbereich III: Rechts- u. Sozialwissenschaft) 교수 1명, 총경 2명(박사1명), 경정 2명, 서기관 1명(박사), 기타 2명</p> <p>경찰공학연구소 (Polizeitechnisches Institut): 총경 3명, 건축서기관 1명, 사무관 1명(박사)</p> <p>* 직업윤리담당(Berufsethik)</p>

제5절 소결론(Zusammenfassung)

독일에서 경찰관 채용 및 승진임용 단계는 순경급 신임직원 채용과정, 경위급 초급간부 임용과정, 경정급 고급간부 임용과정 등 3단계로 나뉘어지며, 각 단계별로 기본교육이 실시된다.

- 경찰관 선발과정 중 특징적인 것은
 - 지원자의 학력에 따라 순경급, 경위급 (경찰대학입학, 인문계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지원가능)으로 구분된다.
 - 신장은 남녀불문하고 165cm 이상이어야 한다
 - 신체검사시 약물복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병행한다
 - 체력검정시 다양한 종목을 테스트(넓어

뛰기, 2000m달리기, 수영실력 증명서 제출, 투포환 던지기 등)

• 운전면허증 소지가 요건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에 있어서**

• 순경급 신규임용 과정은 평균 36개월 정도이며, 주경찰학교(Landespolizeischule)와 주기동경찰국 산하 경찰학교에서 각각 실시

• 경위급 초급간부 임용과정은 평균 40개월⁴⁹⁾ 정도, 주경찰대학(Fachhochschule für Polizei) 또는 경찰학부 및 주경찰학교에서 실시

• 경정급 고급간부 임용과정은 24개월 정도, 주경찰대학과 연방경찰대학원(Polizei-Führungsakademie)에서 실시된다.

● **교육내용 및 방식면에 있어서**

• 이론(Theorie) 교육과 장기간의 실무수습(Praktikum)이 병행된다

• 기본교육 과정에서는 법률학, 교양과목, 경찰실무과목이 가르쳐짐(헌법, 경찰법, 형법,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 민법,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등이 심도 있게 강의되고 있다)

교육의 방향은 범죄대책분야, 교통관련(사고조사, 통제, 관리), 방범순찰분야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 **경찰대학과정에서는**

• 경찰대학 조직은 행정지원부서, 경비·작전·지휘학과, 범죄학·범죄수사학과, 법학과, 교양학과로 편성되어 있다

• 경찰대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간부(일반직원) 출신 경찰관들로 혼성되어 있다.⁵⁰⁾

• 경찰대학장직에는 일반 教授가 임명되고 있으며, 장기간 재직

• 70여명의 전임 교수, 교관과 80여명의 행정직원들이 약 1200여명의 경찰 대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⁵¹⁾

• 수사경찰 지망자와 일반예방경찰 지원자에 대한 전문화교육 실시

• 학생지도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지만 (한국의 경찰대학과는 달리) 자유롭다는 점

• 재학중 초임 경위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받고 교재비 및 식비는 본인

49) 경찰대학 교육기간 중에는 여름, 겨울방학이 없으며, 공무원 휴가 규정에 의하여 연중 26일 전후의 휴가가 실시된다. 따라서 교육기간이 40개월 정도라 하더라도 수업시간이 한국의 4년제 경찰대학이나 일반대학 경찰학과의 수업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50) 이 제도는 향후 한국의 국립경찰대학제도 개편시, 참고(Vorbild)할 만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51) 한국의 경찰대학 학사행정에 필요한 적정 인력판단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적정한 인력의 배치는 경영혁신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려해 볼 문제이다.

부담

● 연방경찰대학원 과정⁵²⁾

• 각주에서 선발된 고급간부 승진후보자들을 연방경찰대학원에서 교육시킴으로써 분권화된 경찰제도의 단점 보완(각주간의 범집행의 통일성과 주경찰 상호간의 협력과 공조에 기여)

• 2년간의 교육을 통하여 범집행전문가 및 우수한 경찰관리자양성에 기여

• 경찰대학원 조직은 행정지원부서, 지휘·조직·행정학부, 경찰관리학부, 법률학 및 교양학부로 편성되어 있다.

• 40여명의 전임 교수, 교관진이 200여명의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교관진은 경정, 총경급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공무원) 경찰간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 우리나라 경찰교육제도 개선 방향

- 대안으로서의 독일경찰교육제도 수용가능성 -

한국 경찰교육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기히 연구된 자료들이⁵³⁾ 있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필자가 연구한 독일 경찰교육제도 중에서 우

리 경찰교육 현실에 반영, 도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제1절 순경급 경찰관 선발 및 교육과정

1. 체력검사 종목의 다양화 필요

경찰직무의 특성상(위험방지 임무수행, 범죄예방, 진압, 경비근무 등) 거리(auf der Straße) 또는 현장(vor Ort)에서 직접강제력을 행사(unmittelbares Zwangsmittel)해야 할 상황이 많은 등 근무여건상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바, 짧은 신규임용 교육기간 중 제한된 체력 단련 시간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체력조건이 잘 갖추어진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체력검사 종목(넓이 뛰기, 수영실력, 투포환 던지기, 장거리 달리기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 학력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의 차별화

최근 들어 고학력 소지자가 경찰직(순경

52) 경찰간부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향후 우리 나라에서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실현된다면 고려해 볼 만한 제도이다.

53) 김복영/류문무, 경찰교육제도 개선방안, 치안연구소, 1996; 최용렬, 경찰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신입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0호, 1998.

급)에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순경급 경찰관 선발시험의 수준은 고졸학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학졸업자나 대학원졸업자를 선발하여 하향 평준화된 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신규임용 교육기간에 있어서 외국의 사례(일본)와⁵⁴⁾ 같이 고졸학력자인 경우 12개월, 대졸학력자인 경우 6개월로 각각 다르게 할 수 있으며, 기간의 長短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同방식은 교육 효과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의할 것이다.

3. 교육기간의 확대

1999년 8월말 현재, 순경급 경찰관 신규임용을 위한 기본교육 기간이 16주(4개월)로 확정되어 실시 중에 있는 바, 이와 같은 단기간 교육사례는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90년대 초반 대규모의 경찰관 증원 때문에 2주간 교육을 실시한 후, 순경으로 임용한 전례가 있었다.⁵⁵⁾

불충분하고, 덜 훈련된, 덜 교육을 받은 경찰관은 국민들에게 불만족스러운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의 명예에 손상을 가할 것이며, 또한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⁵⁶⁾

독일 경찰의 경우, 신입경찰관 교육기간이 평균 36개월 정도이며, 스위스 경찰의 경우, 15개월 정도이다. 선진국 정도에는 못 미치더라도 적어도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 현재의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전체 경찰관 중 80-90%를 차지하는 일선 직원들이야말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법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인 바,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찰교육 성패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과 경찰전체의 몫으로 귀결된다. 짧은 기간내에 대규모 경찰관 증원이 필요하지만, 부족한 경찰력 문제는 인력재배치, 업무간소화, 근무방법개선 등 조직쇄신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일시적인 사유로 교육문제를 성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조직의 장래(경찰관자

54) 최용렬, 전개논문, p. 415. 일본의 경우 순경급 경찰관 신규 공개채용시, 대졸자와 고졸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채용하는 바, 대졸출신 지원자는 15개월, 고졸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는 21개월씩 교육시킨다.

55) 같은 취지의 최용렬, 전개논문, p. 425. 작년까지 유지되었던 6개월간의 신입교육 과정도 짧은 데, 금년부터 적용되는 4개월 교육과정이 적당한 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독일, 일본, 스위스와 비교할 때, 신입 순경이 배워야 할 내용에 비추어 교육 훈련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본다. 현장 투입에의 조급성으로 교육기간의 단축이라는 극단적 해결방법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56) O.W. Wilson, Police Administration, 2nd Ed., 1963, p.130.

질 및 수사권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6개월로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12개월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교과과정 편성 관련

경찰관 기본교육 방향 및 내용에 대한 견해는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경찰조직 内外의 전문가와 관계자들간에 교육방향, 목표, 철학 및 경찰직무(Polizeiliche Aufgabe)수행에 정작 무엇이 필요한 지⁵⁷⁾에 대한 공개적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 이에 따른 교과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전문가 집단이나 교육기관 책임자의 독자적 판단, 정부정책, 재정상태와 時流(탈옥수사건 등)에 너무 얽매어서는 안 된다.⁵⁸⁾

독일경찰의 교육방향 -범죄대책분야, 교통분야, 방범순찰(범죄예방)근무-과 같이 신입경찰관 교육에 대한 방향설정도 참고가 되리라 본다. 교육효과는 단시일내에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장기적 안목에서 결정해야 한다.

제2절 경찰대학 교육과정

1. 경찰대학생 선발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경찰대학의 대학생 선발은 (주로)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국의 20여개 일반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순경공채, 경장특채나 간부 후보생과정을 통해서 경찰직에 입문할 수 있는 바, 국립경찰대학 출신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⁵⁹⁾ 경찰대학제도가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는 주장도 있다.

나. 향후 개선방향

57) 인성교육을 위한 소양과목에 대한 비중과 법집행 전문가로서의 경찰관 양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20세이상 성년이 된 청년들이 선발되어 경찰교육을 받는 경우, 소위 인성교육을 통해서 개별 경찰관의 인격과 품성이 개선되리라고 믿는 것은 과감히 고쳐져야 한다. 소양 및 인성문제는 선발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경찰교육 방향은 전문가로서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58) 탈옥수 사건을 계기로 체포술 훈련에 53시간을 배정하였으면서도 법집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형법(33시간), 헌법(3시간), 경찰행정법(10시간), 형사소송법(15시간), 법학개론 등에 포함 66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

59) 간부경찰관으로의 입문 기회가 상대적으로 희소하며, 지방대학 발전차원에서 국립경찰대학의 존립문제를 놓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성, 민원성 압력까지 행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경찰대학과 중국 및 대만의 경찰대학 제도처럼 우수한 비간부 경찰관들을 다수 선발하여 고등학교 졸업한 경찰대학생과 혼성으로 교육시키는 방향은 검토해 볼 만하다. 독일경찰의 통제도는 조직 구성원간의 화합과 자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젊고 우수한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경찰직으로 유인하는 장점도 살릴 수 있다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비간부경찰관들의 상위직급으로의 승진한계로 인한 사기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현재와 같이 일반직원이 시험 또는 심사승진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경찰대학 교육과정을 통한 승진이 장기적으로는 자질향상에 더 보탬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간부출신 대학생과 고등학교졸업 대학생과의 혼성교육은 조직내부의 위화감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2. 교육과정 및 교육방식

일반대학의 법학과, 행정학과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공과목 이수를 위한 교과목 편성에서 탈피, 특수대학으로서 경찰대학 설립 취지

와 목적에 맞는 교과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⁶⁰⁾ 현재의 교육과정은 필수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 학생들의 과목선택의 여지가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 내용의 보고도 있으며, 재학기간중의 학비면제, 졸업 후 신분상 보장, 4년간 합숙(강제적 기숙사 생활)제도 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⁶¹⁾

경찰대학 교육과정과 내용은 매년 개정, 개선되는 중에 있지만, 개교 20년을 내다보는 시점에서 외부의 비판과 조직내부의 요구를 반영, 근본적인 방향점검과 경찰학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경찰대학만의 독자성과 학문성, 경찰간부 양성이라는 목표를 근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앞에서 소개한 독일경찰대학의 교과과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경찰대학 조직

경찰대학 교직원 및 행정요원 전문화를 위하여 현재 경찰관이 맡고 있는 다수의 직책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대 필요하다. 경찰직무의 특성을 고려, 경찰관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 가능한 보직은 과감하게 교체할 필요

60) 김복영/류문무, 전계논문, p. 28 이하.

61) 김복영/류문무, 전계논문, p. 62. 현재의 군대식 교육방식에서 합리적 교육방식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가 있다. 교관진을 비롯한 필수보직에 대해서만 경찰관을 임명하고 그 외의 보직은 과감하게 개방할 여지가 있다. 이는 경찰대학 뿐만 아니라 타교육기관과 전체 경찰조직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70여명의 교수, 교관진과 80여명의 교직원이 12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근무하는 독일경찰대학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 향후 합숙교육⁶²⁾과 학비면제⁶³⁾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절 경찰대학원 도입문제

경찰대학원이 없는 관계로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경찰관련분야에 대해 학문적 연구와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하여 일반 대학원에 입학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경찰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대만과 독일과 중국의 경우, 대학원 제도를 통하여 고급간부로의 승진 뿐만 아니라 경찰학에 대한 학문적인 성과까지 축적하고 있다. 전문대학원 성격의 경찰대학원 설치를 계기로 경찰간부의 자질향상과 경

찰학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칭 경찰과학대학원을 만들어 범죄수사학, 경찰행정학, 경찰법학, 교통관계학 등 경찰실무분야에 대한 전문과정을 설치하면, 경찰조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살리면서 이론과 실무가 연속선상에 결합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⁶⁴⁾

경찰대학원 입학생은 현직경찰관과 일반대학 졸업자를 동시에 수용하고, 일반대학졸업자(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경위로 특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대학에서 행하고 있는 경감·경정급 기본교육을 경찰대학원에서 행하도록 하면서, 총경 승진자에 대해서는 최고관리자 교육으로서 6개월 정도 경찰대학원에서 실시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 경찰체제로 이행할 경우, 대학원 제도는 고급간부 승진후보자 재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법집행의 통일성유지와 지방경찰 상호간의 협력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62) 현재의 합숙교육제도도 과감하게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부서문제도 상황에 따라 거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3) 장학금제도의 도입과 등록금 저액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며, 독일경찰대학과 같이 일정수당 지급을 통해 식비, 교재비 본인부담과 같은 방식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64) 김복영/류문무, 전계논문, p. 64 이하.

제5장 결론

독일경찰 교육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평범한 젊은이들을 경찰관으로 선발한 후, 세계에서 유래가 드물 정도의 장기간 교육투자를 통하여 전문직업경찰관을 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임순경 교육은 非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을 모집하여, 각주 경찰학교에서 평균 36개월의 경찰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위급 초급간부 임용교육은 한편으로는 인문계 고교출신을 모집하여, 각주 경찰학교 등에서 신임순경 교육내용과 비슷한 평균 18개월간의 기본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각주 경찰대학에 입학하여 평균 36개월간의 학사학위과정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경찰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경찰대학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경찰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인데, 이 때에는 고교출신 대학생과 약 30개월간의 대학교육을 함께 받고 행정학사학위와 함께 경위로 임용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정급에 해당하는 고급간부로의 승진예정자는 각주 경찰대학에서 1년, 연방경찰관리자학교에서 1년 도합 2년간의 대학원 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경찰의 최고관리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독일의 법치주의는 경찰의 철저한 교

육에서 비롯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주법치경찰을 위하여 엄청난 교육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차원높은 법치주의 실현과 참다운 민주봉사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교육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바, 신임순경교육을 최소 1년간으로 확대하고, 경찰대학 교육은 실무중심교육을 많이 가미하면서, 일반직원 출신자들도 일정부분 받아들여 일반경찰직원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경찰대학 출신간부와 일반 경찰직원들과의 조직내의 위화감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대학에 가칭 경찰과학대학원을 신설하여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와 연계속에서 경찰학이론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경감이상 고급간부의 재교육을 담당하여 경찰전체의 교육수준을 한차원 높여야 할 것이다.

경찰관은 그 나라 공권력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법집행 최일선 공무원인 전문직업경찰관의 양성, 교육은 국가의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경찰제와 수사권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경찰교육문제를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신임경찰관 교육문제, 경찰대학제도의 개선과 경찰대학원 설립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

참 고 자 료

● 독일 각주별 인구, 경찰관, 경찰대학생선발, 대학원생, 범죄발생건수 비교

	인 구 (1997년기준)	경찰관정원 (1994년기준)	당해 연도 경찰 대학생 선발숫자 (1993년기준)	경찰대학원생 숫자(1998년)	범죄발생건수 (1997년 기준)
Baden Württemberg	10,374,505	26,700	470	22	598,647
Bayern	12,043,869	28,860	720	18	700,426
Berlin	3,458,763	17,910	600	13	592,638
Brandenburg	2,554,441	8,630	400	8	287,551
Bremen	677,770	3,140	156	6	97,506
Bund/BGS		80	14		
Bund/BKA		565	7	6,586,165	
Hamburg	1,707,986	8,640	300	5	297,534
Hessen	6,027,284	13,840	800	9	457,408
Mecklenburg-Vorpommern	1,817,196	5,620	33	6	211,105
Niedersachsen	7,815,148	18,420	380	8	576,894
Nordrhein-Westfalen	17,947,715	41,000	1700	38	1,352,901
Rheinland-Pfalz	4,000,567	9,190	199	4	266,507
Saarland	1,084,184	3,120	82	4	67,686
Sachsen	4,545,702	11,460	125	4	365,523
Sachsen-Anhalt	2,723,620	8,680	200	4	294,202
Schleswig-Holstein	2,742,293	6,500	223	3	247,106
Thüringen	2,491,119	6,660	152	5	172,531

● 독일경찰대학의 주경찰학교(10개월) 및 주경찰대학(21개월간)에서 교과내용과 시간배정

정치학	123	115
헌 법		166
형사소송법	60	84
형법 및 질서위반법	80	125
도로교통법	140	219(일반예방경찰지원자)
범죄수사·범죄학		313(일반예방경찰지원자)
범죄학		146(수사경찰지원자)
범죄수사학		386(수사경찰지원자)
경찰문서작성 및 관리	156	
심리학	74	146
공무원법	20	83
경찰경비·작전지휘론	16	365
전산론	27	52
사회학		63
경제학		31
경영학		31
교육학		11
연구방법론		10
독일어	30	
타자 및 워드	50	
응급조치	22	
직업윤리	16	
경비작전훈련	98	
태도 및 행동훈련	50	
사격훈련	102	94
일반체육	134	115
수영 및 인명구조	30	
호신술	50	
운전연습	120	
자율학습 등 기타	132	208
	1,672	2,336시간

● 한국 신입순경과정 교과내용

교육기간 : 24주

교 과 목		시 간	
총 계		912	
소 양 과 목	소 계	86	
	경 찰 사	9	
	순국역사 현장교육	7	
	경찰관의 공직윤리	8	
	경 찰 예 절	15	
	국가중요정책	8	
	특 강	13	
	좌선 및 건강관리	4	
	사회봉사활동	7	
	체육 및 극기훈련	15	
실 무 과 목	소 계	741	
	헌 법	5	
	경찰행정법	20	
	형 법	45	
	형사소송법	30	
	형사특별법	16	
	한 문	6	
	실 무 영 어	30	
	컴 퓨 터	34	
	구 급 법	4	
	경 무	40	
	방 범	60	
	경 비	일반경비	26
		훈 련	76
	교 통	35	
	수 사	수사실무	15
		수사서류	25
	형 사	형사실무	54
		감식실무	18
	정 보	15	
보 안	15		
외 사	6		
파출소 실습	76		
무 도	90		
행 정 및 기 타	소 계	85	
	입교 및 과정소개	3	
	졸업준비 및 졸업식	7	
	평 가	12	
	기타(국경일 등)	42	
특 별 휴 가	21		

● 한국 신임순경과정 교과내용

교육기간 : 16주

교 과 목		시 간	
총 계		609	
소 양 과 목	소 계	69	
	중의선양탑 참배	1	
	경찰정신	5	
	순국역사현장 교육	7	
	경찰관의 공직윤리	4	
	경찰예절	6	
	국가중요정책(제2건국)	8	
	특강(경찰서비스현장, 친절·봉사)	32	
	좌선 및 건강관리	2	
	사회봉사활동	4	
실 무 과 목	소 계	344	
	법학개론	5	
	헌 법	3	
	경찰행정법	10	
	형 법	33	
	형사소송법	15	
	한 문	16	
	실 무 영 어	10	
	컴 퓨 터	40	
	경 무	10	
	경 범	74	
	경 비	일반경비 훈 련	8 58
	교 통	12	
	수 사	수사실무 수사서류	9 10
	형 사	형사실무 감식실무	8 6
	정 보	7	
	보 안	6	
	외 사	4	
	체 력 훈 련	소 계	156
		무 도	경찰기초체포술 일격제압술
산악훈련		25	
체 육		29	
제식훈련		49	
행 정 및 기 타	소 계	40	
	입교 및 과정소개	3	
	졸업준비 및 졸업식	3	
	평 가	2	
	기타(국경일 등)	32	